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75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이연희·조인철·이기헌

박 정・박상혁・김정호

정성호 · 김남희 · 문금주

한민수 • 한준호 • 이춘석

허 영·허종식·유종군

어기구 • 김윤덕 • 홍기원

박홍배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커다 란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 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 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음.

엔진이 핵심 부품인 내연자동차와 달리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로서 배터리의 성능과 상태가 전기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좌우함. 그런데, 배터리 문제로 인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

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전기자동차의 운전자가 배터리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성능 및 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운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를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로, "결과"를 "결과[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동축전지의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 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
- 2.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 3.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생 략) 제43조(자동차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widehat{2})$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 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 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하고----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 ----결과[전기에너지를 동력원 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이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 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의 경 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우에는 구동축전지의 검사 결 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 과를 포함한다]-----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 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 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

	<u>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u> 여부
<u><신 설></u>	 2.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
	과 동일한지 여부
<u><신 설></u>	3.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성
	<u>능 및 상태가 국토교통부령</u>
	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